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민 교통편의 지원 공무용 선박에 대한
건조·구입·수리 비용 지원〉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9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주민 교통편의 지원 공무용 선박에 대한 건조·구입·수리 비용 지원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0.
3. 회부연월일 :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의 경우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무용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 중인 선박의 내용연수가 경과 또는 임박했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경우 그 건조·구입·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3항).

Ⅲ. 검토의견

1. 주민 교통편의 지원 공무용 선박에 대한 건조·구입·수리 비용 지원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용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에 공무용 선박의 건조·구입·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박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설></u>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이용되는 선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u>

현행	개정안
	<u>는 바에 따라 그 구입·건조·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유인도서 중 육지와 연결되어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은 약 87개¹⁾이며, 여객선 및 도선 등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섬 주민들은 개인 선박이나 육지에서 선박을 임차하여 생활하면서 비용 부담이 크고 안전상 위험요소가 많아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 지역의 경우,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2023. 5. 16. 시행),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²⁾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선박을 이용하

1) 행정안전부 행정통계(2023.12.31.)

2)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선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여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승선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과 인명 안전장비의 구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신안군, 옹진군, 강화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통해³⁾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은 시간대에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관광선(행정선)의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항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일부 섬의 경우 일 1회 행정선을 운영하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정기선으로 행정선을 운영하는 유인섬 현황]

2023. 12. 31. 기준

시·도	시·군·구	섬 명	운항주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말도	일 1회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	일 2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횡간도	일 1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포도	일 1회

주) 정기적(일1회 등)으로 운항하는 행정선만을 나타낸 것이며, 비정기선으로 행정선을 운영하는 경우는 별도임

※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다.

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승선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과 인명 안전장비의 구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신안군 행정선 운영·관리 지원 조례」

제8조(행정선의 운영) ① 행정선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항 한다.

1. 행정선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수행
2. 중합출장 등 군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주민운송 또는 외부 방문객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행정선 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무용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 중인 선박의 내용연수가 경과 또는 임박했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⁴⁾ 주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함.

특히, 정기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을 관할하는 시·도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라남도(24.4), 경상남도(33.6), 충청남도(32.4), 전라북도(23.5)로 전국 평균 43.3에 비해 많이 낮아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며⁵⁾,

섬은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자원 확보의 측면에서 중요함에도 최근 섬 인구를 전망한 연구에 따르면, 향후 20년(2022년~2042년)간 섬 인구는 18.1% 감소하고, 유인섬 20개가 무인섬이 될 것이라는 분석⁶⁾도 있어 작은 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해상교통에서 소외되어 있는 섬 주민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신규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해

4) 행정안전부에 ‘선박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건의’(신안군, 2023.7.11.)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도선 및 여객선 공영제를 추진 중이나, 선박 노후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나 선박 건조에 큰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국가의 재정 지원 요청

5)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분석에 따르면, 5톤 선박 기준으로 건조비용은 1척당 8억원임.

6) 김태완 외, 「섬 인구감소 대응방안 연구」, 한국섬진흥원

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추진하고 섬 주민 이동권 증진을 위해 올해는 10개소를 선정하여, 선정된 소외도서 항로에는 국가가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운영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에 대한 건조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기획재정부는 여객선·도선 미기항 섬지역의 해상교통망 구축을 위해 2023년부터 국비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선박의 신규 건조 등은 자체 비용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6